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
	보도	2020.4.28.(화) 09:00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(02-2100-2970)	담 당 자	윤 동 욱 사무관 (02-2100-2970)	
	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하 종 목(044-205-3941)		윤 희 정 서기관 (044-205-3942)	

**제 목 :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의  
카드·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서도  
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**

**-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**

- ◆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'긴급재난지원금'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·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이 오늘 (4.28.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- ◆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`20년 9월 30일까지 '긴급재난지원금'을 카드·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,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(기존 무기명식 50만원, 기명식 200만원)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.
- ◆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·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'긴급재난지원금'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정부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'긴급재난지원금'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

○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.

- 이를 위해,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(광역시·기초)에서 이미 구축·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.

**【지역사랑상품권 개요】**

- (개념)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하여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
- (사용처) 대형마트,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·소상공인 가맹점
- (발행형태) ①종이 방식, ②카드 방식, ③모바일 방식
- (관리감독)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(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등을 감독)

□ 그런데, 이러한 카드·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'선불전자지급수단\*'에 해당하므로 무기명식 50만원,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.

\*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(신용카드사의 '선불카드'와 구분)

○ 이에 따라, 카드·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
**【예상사례 1】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 (무기명, 50만원 한도)**

-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 발급이 불가피  
→ 한도 확대로 카드 추가 제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

**【예상사례 2】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(기명, 200만원 한도)**

-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 →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한도 확대 필요

□ 이에 따라, 정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, 사용처,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

○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·무기명식 모두 발행 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\*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(4.22.~23.), 법제처 심사(4.24.~27.), 국무회의 의결(4.28.)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·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어

○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# <기대 효과>



□ 앞으로,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

○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·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※ 붙임 :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이용한도 등) ① <u>법 제2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.</u></p> <p>다만, 「<u>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3조(이용한도 등) ① <u>법 제2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,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.</u></p> <p>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,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: 300만원</p> <p>2. 제1호 외의 경우로서 「<u>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: 200만원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※ (부칙)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,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지자는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

# 참 고

#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도입현황('20.3월 기준)

종류 시도	판형(7)	상 품 권 종 류 별(발행 201, 미발행 25)							
		계 (226)	카드 (59)	카드+지류(14) 카드+모바일(1)	모바일 (33)	모바일 +지류 (10)	지류 (83)	모두 (1)	미발행 기초 (25)
서울	-	25			25개 지자체 전체				
부산	카드	16	16개 지자체 전체 (부산광역시 발행)						
인천	카드	10	10개 지자체 전체 (인천광역시 발행)						
광주	카드	5	5개 지자체 전체 (광주광역시 발행)						
대전	-	5	대덕						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
울산	모바일	5			5개 지자체 전체 (울산광역시 발행)				
대구	-	8							대구전체
세종	카드	-							
경기	-	31	수원, 고양, 용인, 부천, 남양주, 파주, 광주, 광명, 군포, 하남, 오산, 양주, 이천, 구리, 안성, 양평, 여주, 동두천, 연천	화성, 안산, 안양, 평택, 포천, 의왕, 가평, 과천, 의정부	김포	시흥		성남	
강원	지류	18	강릉, 영월				춘천, 원주, 태백, 삼척, 정선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, 홍천		속초, 횡성, 평창, 양양, 동해
충북	-	11	청주, 음성			제천	충주, 보은, 옥천, 영동, 증평, 진천, 괴산, 단양		
충남	-	15	천안		공주	부여	보령, 아산, 서산, 논산, 계룡, 당진, 금산, 서천, 청양, 홍성, 예산, 태안		
전북	-	14	익산	무주, 고창		군산	정읍, 남원, 김제, 완주, 진안, 장수, 임실, 순창, 부안		전주
전남	-	22	광양	영광, 담양 (카드+모바일)		곡성	목포, 여수, 순천, 나주, 구례, 고흥, 보성, 화순, 장흥, 강진, 해남, 영암, 무안, 함평, 장성, 완도, 진도, 신안		
경북	-	23		의성, 칠곡		영주	포항, 김천, 안동, 구미, 영천, 청송, 영양, 영덕, 청도, 고령, 성주, 예천, 봉화, 군위		경주, 상주, 문경, 경산, 울진, 울릉
경남	모바일	18	양산		김해	창원, 남해, 하동, 합천	진주, 통영, 밀양, 거제, 의령, 함안, 창녕, 고성, 산청, 함양, 거창		사천
제주	-								